

[공모펀드 변경 안내]

가. 대상 펀드 : 교보약사 파워플러스 장기소득공제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혼합)

나. 변경 시행일 : 2015년 2월 6일(금)

다. 변경 대상 서류 : 집합투자규약, 투자설명서, 간이투자설명서

라. 변경 내용 :

[집합투자규약]

구분	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17조(투자대상자산등)	투자대상 신설	① (생략) ② (생략) 1. ~ 2. (생략) <u><신설></u>	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<u>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액으로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말한다. 이하 같다)</u>
제32조(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)	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	① (생략)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. <u><단서조항 신설></u>	① (현행과 같음)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. <u>다만, 법 시행령 제26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u>

[투자설명서]

구분	사유	정정전	정정후
[표지] 효력발생일	효력발생일 변경	<u>2015년 1월 5일</u>	<u>2015년 2월 6일</u>
제2부. 집합투자구에 관한 사항 중 '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'	연혁 신설	<u><신설></u>	- <u>투자대상자산 확대 (환매조건부매수 신설)</u> - <u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(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)</u> - <u>'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투자신탁에 세제혜택'과 관련하여 농어촌특별세 부과에 관한 사항 추가</u> - <u>지방세법 개정('15.1.1시행) 사항 반영 - "내국법인에 대한 과세율 변경(14% →15.4%)"</u>
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'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', 가. 투자대상	투자대상 신설	<신 설>	<u>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액으로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말한다. 이하 같다)</u>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'14.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', "나. 과세", (3)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	지방세법 개정('15.1.1시행) 사항 반영	(3)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: <u>개인 15.4% (지방소득세 포함), 일반법인 14%</u> ① (생략) ②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<u>14%</u> 의 세율로 원천징수(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)됩니다. (이하 생략)	(3)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: <u>15.4% (지방소득세 포함)</u> ① (현행과 같음) ②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<u>15.4% (법인세 14%, 지방소득세 1.4%)</u> 의 세율로 원천징수(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)됩니다. (이하 현행과 같음)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'14.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', "나. 과세", (4)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투자신탁에 관한 사항	농어촌특별세 부과에 관한 사항 추가 기재	세제혜택 : 납입액의 40% 소득공제 (연 240만원 한도)	세제혜택 : 납입액의 40% 소득공제 (연 240만원 한도. <u>단, 소득공제를 통해 감면받는 소득금액의 20%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 별도 부과</u>)
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중 '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', "가. 정기보고서"	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	<신 설>	③회계감사 <u>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 말일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. 다만,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습니다.</u> <u>-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</u> <u>-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</u>

			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 투자기구의 해지일 이전 6개월 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 하지 아니한 경우
--	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분	사유	정정전	정정후
[표지] 효력발생일	효력발생일 변경	2015년 1월 5일	2015년 2월 6일
Ⅱ. 매입·환매 관련 정보 중 '2. 과세'	농어촌특별세 부과에 관한 사항 추가 기재	세제혜택 : 납입액의 40% 소득 공제 (연 240만원 한도)	세제혜택 : 납입액의 40% 소득 공제 (연 240만원 한도. 단, 소득공제를 통해 감면받는 소득세액의 20%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 별도 부과)